

군산내흥7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4.15)

1.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군산내흥7 행복주택 총 400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현재 공사 뿐 아니라 향후 해약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는 공고로 먼저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공실이 있을 시에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개별안내)이 가능하므로 입주까지 상당기간(1년 이상 가능)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금회 모집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소득 및 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 소득·총자산 기준 초과자의 재계약은 갱신 회차와 상관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회수(회)로 적용
 -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최초 계약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중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 현 상태대로 계약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신청기간 내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 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주택(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무주택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동호 변경 불가)

■ 입주자격완화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구 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요건 배제(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건설지역: 군산시 ② 연접지역: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상세내용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요건

• **군산내흥7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04.16.~2007.04.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61.04.15.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앱)로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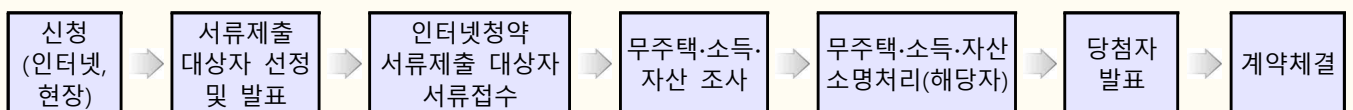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입주자격 완화조건 입주 시 재계약 유의사항**

-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재계약 허용 여부	
기준초과자의 1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2회차 재계약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 재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 보유 요건 완화**

재계약 허용 여부	
1회차 재계약	2회차 이후 재계약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중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해지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단지전체현황

공급 형별 (㎡)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최대 거주 기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16	대학생	34	16.98	8.7616	1.1240	5.1229	31.9885	10	복도식, 벽식, 개별난방	'20.6월
	청년									
21	대학생	106	21.72	11.2075	1.4378	6.5530	40.9183	10		
	청년									
26	대학생	68	26.32	13.5811	1.7424	7.9408	49.5843	10		
	청년							2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26A	고령자(주거약자)	4	26.32	13.5811	1.7424	7.9408	49.5843	20		
36	청년	188	36.65	18.9114	2.4262	11.0574	69.0450	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14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20	

■ 금회모집대상

공급 형별 (㎡)	금회 공급대상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6	대학생	30	12,308	616	11,692	76,920	(+) 3,000	15,308	61,920	
	(-) 9,000						3,308	103,170		
	청년		소득X	12,308	616	11,692	76,920	(+) 3,000	15,308	61,920
			소득O					(-) 9,000	3,308	103,170
21	대학생	60	15,776	789	14,987	98,600	(+) 7,000	22,776	63,600	
	(-) 12,000						3,776	133,600		
	청년		소득X	15,776	789	14,987	98,600	(+) 7,000	22,776	63,600
			소득O					(-) 12,000	3,776	133,600
	16,704		836	15,868	104,400	(+) 8,000	24,704	64,400		
						(-) 13,000	3,704	142,310		
26	대학생	40	18,462	924	17,538	115,380	(+) 11,000	29,462	60,380	
	(-) 14,000						4,462	156,210		
	청년		소득X	18,462	924	17,538	115,380	(+) 11,000	29,462	60,380
			소득O					(-) 14,000	4,462	156,210
	19,548		978	18,570	122,170	(+) 12,000	31,548	62,170		
						(-) 15,000	4,548	165,920		
	주거급여수급자		16,290	815	15,475	101,810	(+) 8,000	24,290	61,810	
	(-) 12,000						4,290	136,810		
고령자(주거약자)	20,634	1,032	19,602	128,960	(+) 13,000	33,634	63,960			
(-) 16,000					4,634	175,620				
26A	고령자(주거약자)	3	20,634	1,032	19,602	128,960	(+) 13,000	33,634	63,960	
							(-) 16,000	4,634	175,620	

영양단 면적 (㎡)	금회 공급대상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36	청년	소득X	80	26,010	1,301	24,709	162,560	(+) 19,000	45,010	67,560
		소득O		27,540	1,377	26,163	172,120	(+) 20,000	47,540	72,120
										(-) 21,0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600	1,530	29,070	191,250	(+) 22,000	52,600	81,250
										(-) 24,000
		주거급여수급자		22,950	1,148	21,802	143,430	(+) 16,000	38,950	63,430
										(-) 18,000
		고령자(주거약자X)		29,070	1,454	27,616	181,680	(+) 21,000	50,070	76,680
										(-) 23,000

- 군산내흥7단지 는 국민임대주택(420세대), 행복주택(40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예비자수에 속한 공급대상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 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16형, 21형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쿠팡(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단, 금회공고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 주택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입주 허용)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아래 요건(대학생 : ①-㉓와 ②~⑤, 취업준비생 : ①-㉓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⑤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아래 요건(청년 : ①-㉓와 ②~⑥, 사회초년생 : ①-㉓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04.16 ~ 2007.04.15**)
- ①-㉓ (사회초년생) **【완화조건】**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④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⑥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아래 요건(신혼부부 : ①-㉓와 ② ~ ⑥, 예비신혼부부 : ①-④와 ③ ~ ⑦, 한부모가족 : ①-④와 ③ ~ ⑥)를 모두 갖춘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
|---|
|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①-④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 ② 【완화조건】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 ④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 ⑤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⑥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②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③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천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5)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수급자(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천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청약자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계약체결
인터넷·모바일	현장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접수			
[접수일정] '26.05.11.(월) 10:00 ~ 05.12.(화) 17:00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접수일정] '26.05.12.(화) 10:00 ~ 17:00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장애인 및 만65세이상 고령자등(정보취약계층)만 현장접수 가능 [접수장소] LH군산내흥7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직기업 (전북 군산시 돌길로 52, ☎1600-1004)	[발표일정] '26.05.26.(화) 16:00 이후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현장 접수기간] '26.05.27.(수) ~ '26.05.29.(금) (10: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접수기간] '26.05.27.(수) ~ '26.05.29.(금) ※ '26.05.29.(금)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제출주소]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LH익산권 주거복지지사 ☎1600-1004	[발표일정] '26.07.23.(목) 17:00 이후 [당첨확인]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안내일정]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이후 공사 발생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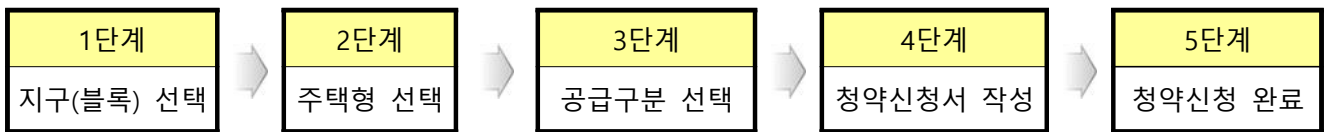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 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6.05.11(월) 10:00 ~ 26.05.12(화) 17:00까지입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05.11(월) 10:00 ~ 26.05.12(화) 17:00까지입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만)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군산내흥7 LH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적 기업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골로 52, 군산내흥7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적기업
교통편	내흥7주공아파트 정류장 하차
약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05.26.(화) 16: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서류제출 방법(온라인 서류제출 불가)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6.05.29(금)]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실위험이 있어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4.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입주자격원화 약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 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 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 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 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 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 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 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 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직장 국세청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 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 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 무 중인 경우) 또는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병무청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 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 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분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후 등록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출)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 계약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예수금 : 잔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61 349 432 387">구분</th> <th data-bbox="437 349 1495 387">완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1 394 432 465"> 소득 요건 </td> <td data-bbox="437 394 1495 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td> </tr> <tr> <td data-bbox="261 472 432 544"> 자산 요건 </td> <td data-bbox="437 472 1495 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요건 배제(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td> </tr> <tr> <td data-bbox="261 551 432 819"> 무주택 요건 </td> <td data-bbox="437 551 1495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① 주택건설지역:군산시 ②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td> </tr> <tr> <td data-bbox="261 826 432 929"> 기간 요건 </td> <td data-bbox="437 826 1495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td> </tr> </tbody> </table>	구분	완화내용	소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요건 배제(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① 주택건설지역:군산시 ②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구분	완화내용									
	소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요건 배제(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① 주택건설지역:군산시 ②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00 1084 1485 1245"> <thead> <tr> <th data-bbox="300 1084 667 1122">입주자격</th> <th data-bbox="671 1084 1485 1122">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0 1128 667 1167">대학생, 청년 계층</td> <td data-bbox="671 1128 1485 1167">10년</td> </tr> <tr> <td data-bbox="300 1173 667 1211">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 data-bbox="671 1173 1485 1211">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r> <td data-bbox="300 1218 667 1245">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 data-bbox="671 1218 1485 1245">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동일 완화자격으로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말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300 1093 1481 1265">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입주자격완화모집은 위 할증비율이 갱신계약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군산역과 장항선철도에 인접하여 열차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 420호, 행복주택 400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청약신청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19~20층 규모로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옥탑지붕에 위성안테나, 피리침, 전 동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701,702,704동의 1~3층의 일부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됩니다. • 전 동 아파트 복도 외부면으로 창호가 설치됩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복도에 면한 침실(이중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방범창살 없음)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 동(701동, 704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저층 세대는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보안등 조명 등에 따라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급속1개소, 이동형4개소)되며, 이는 총 주차대수에 포함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된 주동 통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일부타입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층별 기준이 상이 합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01동 1~4호세대 복도에서 약4m 거리에 전기실, 발전기실 환기 및 배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 배연에 의한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701동, 704동 6호세대 발코니 외부창호에서 우측 약1.5m 거리에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쓰레기수거함 및 생활자원보관소 4개소, 자전거 보관대(4개소 135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세대 내에는 별도의 실외기실 및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등이 없으며,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를 위한 구조체(바닥)가 형성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주차장은 636대(지하주차장 291대, 지상주차장 342대, 근린생활시설 3대 포함)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공간 높이 2.1m입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 지하주차장 환기탑, 자전거보관대, 쓰레기수거함,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부출입구 인근 경비실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팜플릿 상의 면적을 표현한 치수는 설계상의 위치 및 숫자로서 안목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수도계량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PD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경계 녹지(701동 북서측 10호세대 측벽)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 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됨에 따라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의 외부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지하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옥외 보행자 출입통로 및 단지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16, 21형에는 책상,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기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군산내흥7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일성건설(주) 등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세대별 상이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군산내흥7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적기업(군산시 돌끝로 52)  <p>The map displays the location of LH Gunsan Naehung 7 LH Apartment (군산내흥7LH아파트) marked with a red house icon. Surrounding facilities include Gunsan Shinhyeok Seon Umi-ran Center (군산신역세권 우미란센터오션), Gunsan Shinhyeok Seon Hanlabalbaldi Center (군산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터로), Gunsan Naehung Elementary School (군산내흥 초등학교), Gunsan Sangil High School (2027년 3월 예정) (군산상일고등학교 (2027년3월예정)), Gunsan Station (군산역), and Naehung 119 Safety Center (내흥119 안전센터). Major roads like Janghyang-ro (장항선) and Gungnam-ro (군산대건신협) are also visible.</p>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5.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지직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확 약 서

동 확약서의 내용은 '26.04.15. 공고한 _____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공 통)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제부금 완납 및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득·총자산배제) 소득·총자산 요건을 미 충족 시에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허용 가능하며, 임대조건 할증여부는 재계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추가 재계약 허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완화) 입주자모집공고 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며, 이후에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약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_____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 임 장(필요시)

위 임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_____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임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인감)
불인

※ 첨부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_____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대표신청인

- 성명 : _____
- 주민등록상주소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 연락처 : _____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 연락처 : _____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 구입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_____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_____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_____ (인)
 (2) 예비배우자 : _____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_____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당첨자 성명	2. 당첨자 생년월일																																																																								
3. 주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규모 : 전용면적 m ²)																																																																									
5. 주거약자 성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7. 구분	① 65세 이상인 사람 (), ②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③ 청각장애인 (), ④ 시각장애인 (), ⑤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																																																																								
8. 신청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항 목</th> <th style="width: 40%;">시 설 내 용</th> <th style="width: 10%;">신청</th> <th style="width: 10%;">대상</th> </tr> </thead> <tbody> <tr> <td>현관</td> <td>① 마루갑틀 경사로</td> <td>·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td> <td></td> <td>②</td> </tr> <tr> <td rowspan="7">욕실</td> <td>② 단차 없애기</td> <td>·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td> <td></td> <td rowspan="7">①~⑤</td> </tr> <tr> <td>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td> <td>·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안여닫이 → 밖여닫이</td> <td></td> </tr> <tr> <td>④ 좌식 샤워시설</td> <td>·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 (L자형 1개, — 자형 1개)</td> <td></td> </tr> <tr> <td>⑤ 좌변기 안전손잡이</td> <td>·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td> <td></td> </tr> <tr> <td>⑥ 수건걸이 높이 조정</td> <td>·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td> <td></td> </tr> <tr> <td>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td> <td>·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td> <td></td> </tr> <tr> <td>⑧ 좌변기 옆 여유공간</td> <td>·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td> <td></td> <td>②</td> </tr> <tr> <td rowspan="2">주방</td> <td>⑨ 좌식 싱크대</td> <td>· 휠체어·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td> <td></td> <td rowspan="2">①~⑤</td> </tr> <tr> <td>⑩ 가스밸브 높이 조정</td> <td>·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td> <td></td> </tr> <tr> <td rowspan="5">거실</td> <td>⑪ 비디오폰 높이 조정</td> <td>·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td> <td></td> <td rowspan="5">④, ⑤</td> </tr> <tr> <td>⑫ 비디오폰 점자표지</td> <td>·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td> <td></td> </tr> <tr> <td>⑬ 시각경보기</td> <td>·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td> <td></td> <td>③</td> </tr> <tr> <td>⑭ 야간센서등</td> <td>·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td> <td></td> <td>②</td> </tr> <tr> <td>⑮ 조명밝기 조정</td> <td>·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td> <td></td> <td>③</td> </tr> <tr> <td>침실</td> <td>⑯ 조명밝기 조정</td> <td>·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td> <td></td> <td>③</td> </tr> <tr> <td>기타</td> <td>⑰ 음성유도신호기</td> <td>·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td> <td></td> <td>④</td> </tr> </tbody> </table>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	대상	현관	① 마루갑틀 경사로	·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②	욕실	②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①~⑤	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안여닫이 → 밖여닫이		④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 (L자형 1개, — 자형 1개)		⑤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⑥ 수건걸이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⑧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②	주방	⑨ 좌식 싱크대	· 휠체어·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①~⑤	⑩ 가스밸브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거실	⑪ 비디오폰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④, ⑤	⑫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⑬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③	⑭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②	⑮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③	침실	⑯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③	기타	⑰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④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	대상																																																																				
	현관	① 마루갑틀 경사로	·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②																																																																				
	욕실	②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①~⑤																																																																				
		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안여닫이 → 밖여닫이																																																																						
		④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 (L자형 1개, — 자형 1개)																																																																						
		⑤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⑥ 수건걸이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⑧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②																																																																			
	주방	⑨ 좌식 싱크대	· 휠체어·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①~⑤																																																																				
		⑩ 가스밸브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거실	⑪ 비디오폰 높이 조정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④, ⑤																																																																				
		⑫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⑬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③																																																																			
		⑭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②																																																																			
		⑮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③																																																																			
침실	⑯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③																																																																					
기타	⑰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④																																																																					
※ 편의증진시설 제공 대상 ·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제1항에서 정한 주거약자가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가 희망하는 가구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